

#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8.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정환 의원 등 10명(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배용식, 김태형, 홍복조, 윤권근, 안대국, 김귀화)
- 발의일자: 2020. 10. 15.
- 회부일자: 2020. 10. 16.
- 상정 및 의결: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 10. 28.)

##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달서구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 표지의 설치 및 설치장소(안 제4조 ~ 제5조)
- 준공표지의 내용 및 규격 등(안 제6조 ~ 제7조)
- 준공표지의 적용제외(안 제8조)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2조
- 「건축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전의회)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에 준공표지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정착과 설계, 시공, 감독자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시설물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중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용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 수정의견 중 안 제6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와 안 제7조의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자구를 수정하고 별표 삭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에 “시설물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변경하는데 대하여 동의함.

- <별표> 준공표지 규격 및 설치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는 안으로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제안된 조례안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하여도 그 제한의 폭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일관된 설치방법을 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준공표지 인식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안된 조례안으로 정하고자 함. 단, '구분'부분의 "5억원 이상의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라는 정의를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첨부서류: 위원회 수정안

##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를 각각 “건설공사”로 한다.

### <별표>

####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구 분	규격 및 설치 방법	비 고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cm×30c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	글씨는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

##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안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
<p><u>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u>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u>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u>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u>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u>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u>”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 4. (생략)</li></ol> <p>제4조(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제3조에 정하는 <u>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u>로서 보상비를</p>	<p><u>대구광역시달서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p> <p>-----</p> <p>-----</p> <p>-----</p> <p>----- 건설공사 -----</p> <p>-----</p> <p>-----</p> <p>-----</p> <p>-----.</p> <p>제2조(적용범위) -----</p> <p>-----</p> <p>-----</p> <p>-----</p> <p>-----</p> <p>----- 건설공사 -----</p> <p>-----</p> <p>-----.</p> <p>제3조(정의) -----</p> <p>“<u>건설공사</u>”-----</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 4. (현행과 같음)</li></ol> <p>제4조(표지의 설치) -----</p> <p>-----</p> <p>-----</p> <p>-----</p> <p>----- 건설공사 -----</p>

제외한 5억 원이상의 공사(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업종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구분	규격 및 설치 방법	비고
<u>5억 원 이상의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u>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text{cm} \times 30\text{c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	글씨는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별표>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구분	규격 및 설치 방법	비고
<u>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42조제2 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u>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text{cm} \times 30\text{c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	글씨는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